

의안번호	2211980
의 퇴 인	조인철의원
회 답 일	2025.9.12.
추계번호	25D4218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60조제6항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	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규모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이 경우 그 산정기준에는 주택, 농경지 및 염전, 농림시설, 축산물 증식시설, 어선과 어망·어구, 수산물 증식·양식시설, 공공시설, 농작물, 산림작물, 가축, 수산물,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의 피해를 포함시켜야 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0조제6항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규모 산정기준 항목의 확대(안 제60조제4항)
 - 현행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피해금액(농작물·동산(動産) 및 공장의 피해금액이 제외한다)이 다음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 선포

-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¹⁾가 0.1 미만인 시·군·구: 18억원
 -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.1 이상 0.2 미만인 시·군·구: 24억원
 -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.2 이상 0.4 미만인 시·군·구: 30억원
 -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.4 이상 0.6 미만인 시·군·구: 36억
 -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.6 이상인 시·군·구: 42억원
- 개정안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에 농작물, 산림작물 등의 피해 금액을 포함하는 경우 현행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예상
- 재난피해 상황 조사 시 피해금액 산정 대상에 현행법에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농작물, 산림작물, 가축, 수산물 피해금액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난피해액이 현행보다 증가하고 그에 따라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증가, 특별재난지역 선포²⁾에 따른 추가 혜택(세제 감면 등)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피해규모 산정기준 항목의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수, 해당 특별재난지역에 지원하는 평균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행정안전부의 「재해연보」에 따르면 최근 10년(2014~2023년) 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는 총 27건

1)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 ②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.

1.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의 경우: 「지방교부세법」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÷ 「지방교부세법」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
2. 구의 경우: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÷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

2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69조(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)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.

1. 자연재난으로서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.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
- 1의2. 자연재난으로서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·군·구의 관할 읍·면·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
2.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
3.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